

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3. 1

개정 2012. 12. 1

개정 2015. 3. 1

개정 2016. 3. 1

개정 2019. 10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계획(설치전공 및 모집 인원)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관련된 제반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50%이상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에서 운영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) <삭제>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

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